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기관 변경 등 〉  
■ 송기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74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3  |
| 1.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기관 변경 등 .....       | 3  |
| 2. 지하수영향조사서의 등록처를 환경부장관으로 변경 ..... | 9  |
| 3. 부칙 .....                        | 12 |
| ※ 참고자료 .....                       | 14 |
| 1.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절차도 .....          | 14 |
| 2. 최근 5년간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시설 현황 ..... | 15 |
| 3. 지하수영향조사기관 현황 .....              | 17 |

## I. 제안경위

2024년 8월 29일 송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

그런데, 지하수영향조사가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그 심사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있어,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환경부장관에게 하도록 하고,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과정에서의 주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7조 등).

### Ⅲ. 검토의견

#### 1.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기관 변경 등

개정안은 ①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수행하는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기관을 한국수자원공사로 변경하고(안 제7조제2항), ②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주민에게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 [ 개정안 조문대비표 ]

| 현행                                                                                                                                                                                                                                 | 개정안                                                                                                                                                       |
|------------------------------------------------------------------------------------------------------------------------------------------------------------------------------------------------------------------------------------|-----------------------------------------------------------------------------------------------------------------------------------------------------------|
|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br>① (생략)<br>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 |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br>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br>-----<br>-----<br>----- 「 <u>한국수자원공사법</u> 」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게 하여-----<br>-----. |

| 현행                                             | 개정안                                                                                                                                                                                                                                                                                                                                                                                                  |
|------------------------------------------------|------------------------------------------------------------------------------------------------------------------------------------------------------------------------------------------------------------------------------------------------------------------------------------------------------------------------------------------------------------------------------------------------------|
| <p>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 <p>-----</p> <p>-----.</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을 허가하려면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이나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용도가 아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공고 및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구의 조례로 정한다.</p> <p>⑤ ~ ⑨ (현행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p> <p>⑩ -----</p> <p>-----</p> |
| <p>&lt;신 설&gt;</p>                             |                                                                                                                                                                                                                                                                                                                                                                                                      |
| <p>③ ~ ⑦ (생략)</p>                              |                                                                                                                                                                                                                                                                                                                                                                                                      |
| <p>⑧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평가기</p>          |                                                                                                                                                                                                                                                                                                                                                                                                      |

| 현행                                                                                                                                                                                                                                                                                                                                                            | 개정안                                                                                                                                                                                                                                     |
|---------------------------------------------------------------------------------------------------------------------------------------------------------------------------------------------------------------------------------------------------------------------------------------------------------------------------------------------------------------|-----------------------------------------------------------------------------------------------------------------------------------------------------------------------------------------------------------------------------------------|
| <p>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u>작성지</u><br/> <u>침·작성내용</u>, 그 밖에 필요한<br/>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br/> 록)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br/> 따른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지<br/> 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자<br/>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br/> 따라 <u>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u><br/> <u>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u><br/>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br/>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br/>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br/>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생략)</p> | <p>-----<u>작성지침</u><br/> <u>· 작성내용· 심사방법</u>-----<br/> -----<br/> -----.</p> <p>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br/> 록) ① -----<br/> -----<br/> -----<br/> -----<br/> -----<u>환경부장관</u>-----<br/> -----.<br/> -----<br/> -----.</p> <p>② (현행과 같음)</p> |

현행법 제7조1)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 1)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2.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허가 신청 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항목, 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작성지침과 작성내용 등을 심사하며, 심사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및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하수법」 제27조2)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지하수영향조사서의 내용이 주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등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를 시·군·구청장이 수행함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에

- 
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⑤ 삭제
- ⑥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21. 1. 5.>
- ⑦ 삭제
- ⑧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지하수법」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 전문성 및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개정안은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영향조사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지하수 개발과정에서 전문성을 향상하고 주민수용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7조제2항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시 해당 지역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고려하는 등 관할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해당 지자체의 심사가 필요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를 진행할 경우 허가 여부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심사의견에 종속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sup>3)</sup>을 제출하였음.

참고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신규·연장 허가 건수가 연평균 7,269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sup>4)</sup>으로 수자원공사의 실질적 심사 수행에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임.

---

3) 환경부는 현행 「지하수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의 전문성, 객관성 결여 등으로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가 곤란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4)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 허가 시설의 연평균 건수가 1,210건이고 연장 허가 건수가 6,05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하여 모든 허가 대상 시설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경우 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자의 부담이 크고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규모 이상<sup>5)</sup>의 시설에 한정하여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환경부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안 제7조제10항에서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방법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미 「지하수법 시행령」 제9조<sup>6)</sup>에서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맞는지와 그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사방법을 추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5) 현재 허가 대상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의 약 97%가 일 500톤 미만 규모임.

6) 「지하수법 시행령」 제9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한 자료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맞는지와 그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할 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 지하수영향조사서의 등록처를 환경부장관으로 변경

개정안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현행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제1항)

### [ 개정안 조문대비표 ]

| 현행                                                                                                                                                                                        | 개정안                                                                                                                     |
|-------------------------------------------------------------------------------------------------------------------------------------------------------------------------------------------|-------------------------------------------------------------------------------------------------------------------------|
|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u>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① -----<br>-----<br>-----<br>-----<br>---- <u>환경부장관</u> -----<br>-----.<br>-----<br>-----<br>-----.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처를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sup>7)</sup>함으로써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불신을 해소하려는 입법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임.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은 「지하수법」 제28조<sup>8)</sup>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동법 시행령 제38조<sup>9)</sup>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7)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도 있음.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 현황 조사
2. 환경영향 예측·분석
3.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및 관리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 및 그에 따른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하수법」 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제2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9)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5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술사법」에 따라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기술사가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자연과학(이학) 또는 공학 관련 연구소
5.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6. 그 밖에 지하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거부할 수 없는 기속행위로서 행정청의 재량사항이 없는바, 환경부장관으로 등록처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수가 2022년 기준 872개(참고자료3)에 달하고 있어 환경부장관으로 등록처 변경시 지하수영향조사업 등록에 따른 지도 및 점검업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바, 관련 인력을 보유한 관할 지자체가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3. 부칙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과 관련된 경과조치를 규정하며,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규정하려는 것임(부칙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 개정안 조문대비표 ]

| 현행 | 개정안                                                                                                                                                                                                                                                                                                              |
|----|------------------------------------------------------------------------------------------------------------------------------------------------------------------------------------------------------------------------------------------------------------------------------------------------------------------|
|    |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본다.</p> <p>제3조(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위하여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

시행령 개정 준비 등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안 제1조의 시행일 규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음.

개정안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처를 변경하고,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주민의견수렴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본문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부칙안 경과조치 및 적용례 조문도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음.

|               |
|---------------|
| 문 의 처         |
| 02) 6788-5533 |

## 참고1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절차도



## 참고2

## 최근 5년간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시설 현황

### □ 연도별 용도별 신규 지하수 허가시설 현황

(단위 : 건)

| 구 분 | 평 균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
| 합 계 | 1,210 | 1,035 | 1,280 | 1,268 | 1,134 | 1,334 |
| 생활용 | 552   | 477   | 637   | 572   | 515   | 561   |
| 공업용 | 80    | 78    | 78    | 73    | 72    | 101   |
| 농업용 | 575   | 478   | 565   | 621   | 547   | 664   |
| 기타용 | 4     | 2     | -     | 2     | -     | 8     |

※ 2023~2019년 지하수 조사연보 기준

### □ 연도별 용도별 지하수 허가시설 전체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 평 균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
| 합 계 | 30,293* | 30,943 | 30,779 | 31,093 | 29,694 | 28,954 |
| 생활용 | 14,954  | 14,697 | 14,865 | 15,534 | 14,920 | 14,756 |
| 공업용 | 2,349   | 2,307  | 2,336  | 2,414  | 2,345  | 2,342  |
| 농업용 | 12,881  | 13,850 | 13,479 | 13,034 | 12,315 | 11,725 |
| 기타용 | 109     | 89     | 99     | 111    | 114    | 131    |

※ 2023~2019년 지하수 조사연보 기준

### □ 지하수 허가시설 유효기간 연장 건수

- 6,059건 = 30,293개소(최근 5년간 지하수 허가시설 평균수) / 5년(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유효기간)

### □ 연도별 용도별 지하수 허가시설 이용량 현황

(단위 : 천톤)

| 구 분 | 평 균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
| 합 계 | 322,616 | 312,992 | 317,735 | 330,460 | 324,134 | 327,756 |
| 생활용 | 159,987 | 151,430 | 154,753 | 163,373 | 163,500 | 166,880 |
| 공업용 | 70,755  | 67,795  | 68,791  | 72,785  | 71,243  | 73,158  |
| 농업용 | 89,017  | 91,518  | 91,498  | 91,428  | 86,485  | 84,159  |
| 기타용 | 2,856   | 2,249   | 2,693   | 2,875   | 2,907   | 3,558   |

※ 2023~2019년 지하수 조사연보 기준

□ 양수능력별 신규 허가시설수

(단위 : 개소)

| 구 분        | 합 계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
| 합 계        | <b>6,034</b> | <b>1,035</b> | <b>1,280</b> | <b>1,268</b> | <b>1,134</b> | <b>1,334</b> |
| 30톤 미만     | 399          | 77           | 132          | 77           | 49           | 64           |
| 30~100톤    | 1,443        | 315          | 304          | 279          | 249          | 296          |
| 100~150톤   | 707          | 116          | 100          | 166          | 160          | 165          |
| 150~300톤   | 2,503        | 350          | 527          | 516          | 532          | 578          |
| 300~500톤   | 809          | 134          | 177          | 191          | 116          | 191          |
| 500~1,000톤 | 134          | 27           | 19           | 18           | 19           | 36           |
| 1,000톤 이상  | 28           | 8            | 9            | 1            | 7            | 3            |
| 구분 불가      | 26           | 8            | 12           | 3            | 2            | 1            |

※ 먹는샘물 60개 업체 일일취수허용량 평균 844.2톤(최대 4,600톤)

### 참고3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현황

- ☐ (근거) 「지하수법」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 ☐ (수행업무) 지하수 개발·이용이 주변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허가에 반영하는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
- ☐ (등록요건) 기술인력 3인(기술사 1, 기사 2) 및 지하수 수위측정 장비, 측정장비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 (등록가능기관) ①지하수조사전문기관, ②지질 및 지반,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 사무소, 공학관련연구소, ③먹는물관리법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 대행자, ④그외 지하수 관련 업무 수행 법인
- ☐ (등록현황) '22년 기준 전국 872개 기관 등록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872 | 75 | 16 | 5  | 11 | 1  | 11 | 5  | 11 | 137 | 31 | 46 | 132 | 94 | 99 | 131 | 42 | 25 |